



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
[시행 2024. 3. 19.] [기상청고시 제2024-10호, 2024. 3. 19., 타법개정.]

항공기상청(정보기술과), 032-740-2850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기상법」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·운영 장소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 6. 21., 2024. 3. 19.>

제2조(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·운영 장소) 「기상법 시행령」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장소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22. 6. 21., 2024. 3. 19.>

1. 인천국제공항
2. 김포국제공항
3. 제주국제공항
4. 무안국제공항
5. 양양국제공항
6. 울산공항
7. 여수공항

[제목개정 2022. 6. 21.]

제3조(재검토기한) 기상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개정 2022. 6. 21.>

부칙 <제2024-10호, 2024. 3. 19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